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16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6구합50090 재산세과세대장 이동정리 및 등재취소에 대한 취소

원 고 A

피 고 [redacted]시장

변 론 종 결 2016. 4. 28.

판 결 선 고 2016. 5. 1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'재산세 과세대장 이동정리 및 등재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'에 대하여 2016. 2. 25.에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16

1. 이 사건의 경위

가. 원고는 피고가 작성·관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2014. 1. 28.경 [redacted]시 B 임야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 지상 목조 단독주택 11㎡에 관한 납세자로 등재(갑 제1호증)되었다가 이후 2015. 6. 16.경 이 사건 임야 지상 목조 단독주택 34.4㎡에 관한 납세자로 등재(갑 제2호증)되었다.

나. 피고는 2015. 9. 3.경 위 갑 제1호증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와는 다른 [redacted]시 C으로 이동 정리하고, 갑 제2호증의 재산세 과세대장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현존하는 주택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그 등재를 취소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6. 2. 22.경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갑 제1호증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이동 정리하고, 갑 제2호증의 재산세 과세대장의 등재를 취소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, 피고는 같은 달 25. 이를 거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거부행위'라 한다)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5,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고는 이 사건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나.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,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,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,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16

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(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).

다.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·비치에 관한 지방세법 제120조, 제121조, 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,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, 제63조, 제64조 등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, 지방자치단체가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재산세 과세행정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, 이로 인하여 그 대장에 기재된 토지나 건축물 등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,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나 납세의무가 그 대장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.

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거부행위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,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정중

판사 홍다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16

판사 이승훈